

-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 3대 불법행위 119 소방안전패트롤 중점단속 안내

항상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화재 등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는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소홀,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화재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대형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안전의식 개선 및 3대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시단속을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임으로**,

각 건축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께서는 비상구 상시개방, 소방시설 정상유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주차 금지로 이용객의 안전도모 및 불법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소방서에서는 언제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귀하께서도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주요위반 사례

- ◆ (복합건물) 피난계단상 방화문 철거 행위 : 1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 (근린생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전원 차단행위 : 200만원 과태료 부과(소방시설법)
- ◆ (판매시설) 소화전주변 불법주차 행위 : 4만원 벌칙금 부과(도로교통법)

### 【3대 불법행위 관련 안내사항】

- 단속범위 : 비상구 폐쇄 및 피난·방화시설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 위반 시 조치사항
  - 비상구 폐쇄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차단
    - ▶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5년(7년,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7천만원, 1억원) 이하 벌금
    -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불법주차 :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2020. 08.

양주소방서장